

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

◎보건사회부고시 제 87-1호

식품위생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. 1987. 1. 9 보건사회부장관

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

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. 제 4, 식품별 규격 및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8. 백설탕의 정의중 “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”을 백색-무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 하며, 18. 식초 가. 규격의 “(3) 총산(W/V%) : 4.0이상(초산으로서)”을 (3) 총산(W/V%) : 4 - 15(초산으로서)으로, 나. 시험방법 (1) 비중 제 7 일반시험법 1. 일반시험법 라. 지질 (2) 물리적시험 가. 비중에 따라 시험한다를 다. 시험방법 (1) 비중 검체를 섞은후 15°에서 부평비중계로 측정한다고 하고 나. 제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제조기준

(1) 양조식초와 합성식초는 혼합제조할 수 없다.

(2)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에는 일체의 색소를 혼합제조할 수 없다.

40. 유산균음료의 정의중 “(발효유를 제외한다)”를 (발효유를 제외하며 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)로, 51. 볶음커피중 “볶음”을 볶음으로 하며, 72. 우유의 다. 시험방법 (1) 비중, 75. 가공유의 다. 시험방법, 84. 발효유의 나. 시험

방법 (1) 무지유고형분, 제 7. 일반시험법, 5. 착색료의 시험법의 나. 유용성색소 (2) 시험조작 (가) 용제에 의한 분리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2. 우 유

다. 시험방법

(1) 비중

검체를 잘섞어 실린더에 넣고 잠시 정지하여 기포가 없어졌을 때 부평비중계로 측정한다. 15°이외의 온도(10~20°)에서 측정했을 때에는 제 13. 부표중의 우유비중 보정표에 따라 보정한다.

75. 가공유

다. 시험방법

72. 우유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무지유고형분은 (3) 무지유고형분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건조물질의 %에서 유지방분의 % 및 자당의 %를 감하여 무지유고형분으로 한다. (자당의 %는 78. 가당연유중의 (나) 자당에 따라 구한다)

84. 발효유

나. 시험방법

75. 가공유에 따라서 시험한다.

104. 발효버터유의 가. 규격 “(3) 유지방분(%) : 1.5이상”을 (3) 유지방분(%) : 1.5이하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의 식초 규격에 의하여 식초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1987. 3. 31 까지 이 고시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